



규정

TWCS인증제 운영규정


문서번호	TWP-A509
제정일자	2014. 10. 14.
개정일자	2016. 08. 05.
개정번호	2
페이지	1/5

목 차

- 제1장 총칙
- 제2장 자격 및 지원
- 제3장 운영위원회
- 부칙

작성부서	TWCS인증센터	제정일자	2014. 10. 14
------	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승 인
직 책	담 당	교무처장	학생처장	산학협력처장	취업지원처장	총 장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A509
		제정일자	2014. 10. 14.
	TWCS인증제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6. 08. 05.
		개정번호	2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 TWCS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 및 인증종류) ① TWCS(Tong Won Certification System)동원인증제는 아래 인증종류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인 학생의 해당 능력을 보증하는 제도이다.

② TWCS 동원인증제의 인증 종류는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에게 자동적으로 인증이 주어지는 과정형 인증과,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이 신청하여 인증이 주어지는 신청형 인증으로 한다.

제3조(인증분류) <삭제 2016.08.05.>

제4조(업무의 분장) ① TWCS 인증센터는 TWCS 동원인증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한다.<개정 2015.05.29>

1. 기본방향 수립
 2.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
 3.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
 4.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5. <삭제 2016.08.05.>
 6. 기타 등 인증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② <삭제 2016.08.05.>

제2장 인증 운영<개정 2015.05.29.>


제5조(인증분야) TWCS의 인증분야는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규교육 과정 및 비정규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선정하며, 세부인증분야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<개정 2016.08.05.>

제6조(인증 신청 및 심사) ① 신청형 인증 지원 자격 해당자는 TWCS 인증 신청서<별지서식 제1호>를 작성,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TWCS 인증센터에 신청한다.

② 과정형 인증자격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인증분야에 대하여 일정수준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을 인증자로 선정하도록 한다.<개정 2015.05.29., 2016.08.05.>

제7조(평가형 인증 시기 및 심사) <삭제 2016.08.05.>

제8조(인증서 발급) TWCS 인증센터는 「TWCS 인증제 운영 지침」에서 <별표 1> TWCS

	규정	문서번호	TWP-A509
		제정일자	2014. 10. 14.
	TWCS인증제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6. 08. 05.
		개정번호	2

인증제 인증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TWCS 동원인증서<별지서식 제2호>를 발급할 수 있다.<개정 2015.05.29., 2016.08.05..>

제9조(인증자 지원 및 포상) TWCS 인증센터는 인증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 및 포상을 할 수 있다.<개정 2015.05.29>

1. TWCS 인증자 관리<개정 2015.05.29>
2. 졸업 시 취업 우선권 부여
3. 해외어학연수 우선권 부여(Global외국어 인증)
4. 최우수 TWCS 동원인증자 포상

제9조의1(TWCS Honor 선발 제도) ① TWCS 인증센터는 「TWCS 인증제 운영 지침」에서 <별표 2> TWCS인증제 인증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인증자에 대해 ‘TWCS Honor’로 선발할 수 있다.

② 그 세부사항은 TWCS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<신설 2015.05.29., 2016.08.05.>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10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TWCS 동원인증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대학교 내 TWCS 운영위원회를 둔다.


-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TWCS 센터장이 되며, 위원은 이 대학교 교원, 산학협력 기업의 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<개정 2016.08.05.>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둔다.

제11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개정 2015.05.29>

1. 제5조(인증분야)의 선정
2. 제5조(인증분야)의 세부 자격요건 선정 <개정 2016.08.05.>
3. 인증자 지원에 관한 사항
4.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2조(회의) 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위원장이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위원의 3분의 1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
3.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의 심의가 있을 때
4. 위원회는 위원 3분의2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,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A509	
		제정일자	2014. 10. 14.	
	TWCS인증제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6. 08. 05.	
		개정번호	2	페이지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되,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지서식 제1호>

정보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TWCS 동원인증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TWCS인증을 위하여 보존되며 인증인원 관리용도로만 사용됩니다.
------	---

TWCS 동원인증 신청서

학 부		전 공	
성 명			
학 번			
자격 사항			
License/자격			
Global외국어			
인성(봉사)	1.		
	2.		
	3.		
	4.		
제출서류	성적증명서(License/자격, Global외국어)		
	봉사활동 확인서		

상기 본인은 위 신청서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, 신청서 기재 사항에 허위가 드러나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 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 : (인)

동원대학교 총장 귀하

<별지서식 제2호>

TWCS 동원인증서

학부 (과) ○○○○○○○○

성 명 ○○○

인증분야 ○○○,○○○,○○○

위 학생은 이 대학교가 시행하는 TWCS 동원인증제의 인증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동원대학교 총장

